

구미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16.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상위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법령 변경 (안 제2조, 제8조, 제12조, 제13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폐지 ⇨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 「전자정부법」으로 개정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 ⇨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으로 변경

나. 전자우편 이용, 자료제공, 포인트 관련 삭제 (안 제3조, 제7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 공직자 통합메일(문화체육관광부) 보급 및 웹메일 서비스 종료에 따른 전자우편 ID 관련 삭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료제공 관련 삭제
- UMS시스템 서비스 종료에 따른 포인트 관련 삭제

다. 전자 민원처리대상 확대 (안 제9조)

- 「전자정부법」 제10조에 의거 공인전자서명으로 민원인 등의 본인 확인이 가능함에 따라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하며”라는 단서 삭제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13조의2, 제19조)

3. 조 례 안 : 불임

4. 참 고 사 항

- 가. 관계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불임)

구미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를 “구미시”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인터넷’이라 함은”을 ““인터넷”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인터넷시스템’이라 함은”을 ““인터넷시스템”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홈페이지’라 함은”을 ““홈페이지”란”으로, “제공하기위하여”를 “제공하기 위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전자민원’이라 함은 「민원사무처리」를 ““전자민원”이란 「민원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제2조제6호 중 “‘비밀번호’라 함은”을 ““비밀번호”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전자민원창구”란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시가”를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가”로 하고, 같

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에 의한”을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민원사무처리」를 “「민원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민원사무”를 “민원”으로, “제11조에 의해”를 “제12조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전자적민원 신청대상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을 “전자 민원처리 대상에 대하여 민원종류,”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법 제28조”를 “「전자정부법」 제31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의2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 중 “비밀번호를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 규정」에 의하여”를 “비밀번호를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 규정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구미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구미시(이하 "시" 라 한다)</u> 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구미시</u> -----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u>정의</u> 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u>뜻은</u> ----- -----.
1. ' <u>인터넷</u> ' 이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	1. " <u>인터넷</u> "이란 ----- ----- -----.
2. ' <u>인터넷시스템</u> ' 이라 함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2. " <u>인터넷시스템</u> "이란 ----- ----- ----- -----.
3. ' <u>홈페이지</u> ' 라 함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u>제공하기 위하여</u>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3. " <u>홈페이지</u> "란 ----- ----- <u>제공하</u> <u>기 위하여</u> ----- -----.
4. ' <u>전자민원</u> ' 이라 함은 「민원	4. " <u>전자민원</u> "이란 「민원 처리

<u>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자치단체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 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u>	----- ----- ----- ----- -----.
5. <u>‘개인정보’ 라 함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u>	5. <u>“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u>
6. <u>‘비밀번호’ 라 함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u>	6. <u>“비밀번호”란</u> ----- ----- ----- ----- -----.
7. <u>“전자민원창구라 함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전자 민원창구를 말한다.</u>	7. <u>“전자민원창구”란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u>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 (생략)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u>시가</u>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u>구미시(이하 “시”라 한다)가</u> ----- -----

2. ~ 4. (생략)

5. 전자우편 ID 이용

6. · 7. (생략)

③ · ④ (생략)

제7조(홈페이지 자료제공) 시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목적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8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전자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에 의한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 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하되, 민원

2. ~ 4. (현행과 같음)

<삭 제>

6. · 7.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제8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 -----
----- 「전자정부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

----- 「민원 처리

-----.

② -----

----- 민원
----- 제12
조에 따라 -----

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

③ (생략)

제9조(전자 민원처리) ① 전자적
민원 신청대상민원은 본인의 확
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
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
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
다.

② (생략)

제12조(시장과의 대화방 운영) ①
(생략)

② 시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
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
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
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
리하여야 한다.

제13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① (생략)

②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시
민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고 인터넷 설문 및 정책 결정
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전자 민원처리) ① 전자 민
원처리 대상에 대하여 민원종
류, -----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시장과의 대화방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

-----.

제13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전자정부법」 제3
1조-----

에 의견 수렴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제2항과 관련하여 인터넷 설문에 응답하는 설문 및 정책 결정 참여자에게는 참여시 600포인트의 사이버 포인트를 부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하여 시홈페이지 방문자에게는 1일 1회에 한하여 30포인트를 부여한다.

④그 밖에 시민들의 시정 참여도에 따라 사이버 포인트를 부여하고, 시 홈페이지 회원에게 가입시 1,500포인트, 월 정액 1,500포인트를 부여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부여받은 사이버 포인트는 30포인트 당 문자메시지 1건, 50포인트 당 음성메시지 1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의2(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행사) ① (생략)

②제1항에 의한 성적 우수자 및

-----.

<삭 제>

<삭 제>

<삭 제>

제13조의2(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행사) ① (현행과 같음)

②----- 따른 -----

참여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할 수 있다. 제14조(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 시장은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하여야 하며 그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15조(시민 등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 ① 시장은 지역 정보화 활성화와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민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할 수 있으며 보급 및 운영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전자우편 ID보급·운영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보급받은 시민은 게재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제19조(비밀번호관리) 제5조제2항에 의한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u>비밀번호를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u>	----- -----. <삭 제> <삭 제> 제19조(비밀번호관리) ----- ----- ----- <u>비밀번호를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 규정에 따라</u> ----- -----.
---	--

관계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2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 7호 생략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민원실의 설치)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다.

□ 「전자정부법」

제9조(방문에 의하지 아니하는 민원처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개선,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3항의 통합전자민원창구에서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의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이를 연계하여 통합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이 제2항 및 제3항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등을 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그 민원의 소관 기관에 직접 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⑤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된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를 제14조에 따른 방법으로 납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수수료 외에 별도의 업무처리비용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⑥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 제5항에 따른 업무처리비용, 제6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민원사항 등의 범위와 감면 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수렴)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 「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그 밖에 법령에서 공청회·여론조사 등을 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병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그 의견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 및 의견제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의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민을 대상으로 통계 조사,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

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성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소관 실 · 과		정보통신담당관실
입 안 자	과 장	김 우 춘
	담 당	김 용 식
	담 당 자	박 미 향 (480-6682)